

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5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*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.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계	비용자성 사업비	기본경비	예치금
2021 계획	35,110	12,956	150	22,004
2021 결산	35,987	4,305	78	31,604

- 나.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22,004백만원에서 31,604백만원으로 9,600백만원 증가하였고,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73백만원에서 440백만원으로 167백만원 증가하였음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(재무활동)를 당초 15,872백만원에서 25,639백만원으로 9,767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편성 대비 20% 초과 변경하고자 함

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22,277	32,044	9,767
이지수입	273	440	167
예치금수회	22,004	31,604	9,600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22,277	32,044	9,767
비용자성사업비	6,305	6,305	-
예치금	15,872	25,639	9,767 (61.5%)
기본경비	100	100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 한재리 (☎ 2133-8665)